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6.

발 의 자 : 권영세 · 김재섭 · 서천호
윤재옥 · 김기웅 · 이인선
최수진 · 조정훈 · 신성범
최보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,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,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,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, 디지털전환 · 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,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전략적인

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21조의30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21조의30(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내		제121조의30(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) ① ---		
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교환		-----		
대상법인”이라 한다)의 지배주		-----		
주·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		-----		
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배주주등”		-----		
이라 한다)이 <u>2026년 12월 31</u>		----- <u>2029년 12월 31</u>		
<u>일</u>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		<u>일</u> -----		
는 사업재편계획(이하 이 조에		-----		
서 “사업재편계획”이라 한다)에		-----		
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		-----		
지분(이하 이 조에서 “주식등”		-----		
이라 한다) 전부를 양도하고		-----		
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		-----		
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		-----		
른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		-----		
“교환양수법인”이라 한다)의 주		-----		
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	-----		
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		-----		
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		-----		
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		-----		
발생한 양도차익(교환양수법인		-----		
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		-----		

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)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(상속·증여를 포함한다)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 1.·2. (생략) ② ~ ⑥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